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208605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2086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5. 1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고양시 덕양구 C 도로 43㎡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2. 접수 제97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이므로,株式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기존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포함한 주주의 권리를 일체로 양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株式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D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판단

잔여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야 하므로, D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부당하게 염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청산인의 환가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7. 8. 체결되었고, 2016.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한 2016. 7. 무렵에 환가대금의 분배가 이루어져 F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혜령, 판사 김민지